B.E. 2545(2002) 보건부고시(제263호)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식품 규정

소포장 용기에 담겨 손쉽게 입으로 섭취하는 클루코만난 또는 곤약가루가 첨가물로 들어간 태국식 젤리와 젤리를 섭취한 어린이가 목에 걸려 질식, 기도 막힘 등을 유발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례 보고에 따라 위와 같은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예방책이 필요하다.

B.E. 2522년(1979) 식품법 제5조 및 제6조 (8)의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태국 헌법 제 29조, 제35조, 제48조, 제50조에 따라 보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항. 글루코만난 또는 곤약가루가 함유된 소포장 용기에 담긴 모든 형태의 직경 또는 가장 넓은 면적의 가로 길이가 4.5cm인 태국식 젤리와 젤리의 라벨표기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 태국식 젤리와 젤리는 생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다.

제2항. 본 고시는 관보에 게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1)]

B.E. 2545(2002)년 9월 12일 고시
쑤다랏 께류라판
공중보건부 장관

짜루완/수정
2003년 1월 24일

1) 2002년/P96N/3/2002년 10월 7일